

2022. 7. 21. ~ 8. 2.
- 13일간 -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277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8.2.	원안가결
2278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8.2.	원안가결
2279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8.2.	원안가결
2280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8.2.	원안가결
2281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출연금 출연계획안	2022.8.2.	원안가결
228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8.2.	원안가결
2283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8.2.	원안가결
2284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2022.8.2.	원안가결
2285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8.2.	원안가결
2286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2022.8.2.	수정가결
228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8.2.	수정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 사업 법적근거 명시, 대상 구체화(안 제7조)
 -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사항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확보 등 제도 개선

권고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휴게실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2조)

【 30%감면 】

· 장성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나 법인

【 50%감면 】

· 청년친화강소기업

· 산업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100%감면 】

· 지자체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못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증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을 조정(안 제34조)

- 벤처기업이거나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5조)

- 재난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한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상
위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 삭제(안 제35조제4항)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개(안 제7조)

- 청사관리 업무 담당자를 위한 휴게면적 기준 신설(별표 제1호 및 제2호)

- 관계법령 개정관련 용어 및 오타자 정비(안 제30조제1항 및 제66조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제2조)
 - 감면기한 연장 : 2022. 6. 30. ⇒ 2024. 12. 3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 관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조례규정 신설(안 제3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부 서	출 연 기 관	2022년 출연금	사 업 내 용	관 련 법 령
재무과	장성장학회	45,667	지역인재 발굴 육성 교육기반 마련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회관 건립부지 면적증가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주차장 면수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의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단위 : m², 천원)

지번		면적			추정가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변경	면적 30% 초과 증가 (5필지 증가)
장성읍 영천리 899-6외 3	장성읍 영천리 899-6외 8	1,432	782	2,214	-	350,40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위생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시행 2021.7.6.)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장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 장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안 제10조)

·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에 대하여 예외 사항 규정

- 폐의약품 처리 규정 신설(안 제14조)
 - 폐의약품 배출장소, 수거 주기 등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기준 신설(안 제5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평가 관련 내용 규정
-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세분화 (안 별표 1)
 -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세분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현재 3개 지자체(전남 장성, 광주 북구, 광산구)가 현재 부정형의 경계선으로 행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경계지역 기업·주민 민원 발생 예상
- 첨단3지구 개발사업 완료 후 주민 생활편익 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
- 지난해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21. 12. 7.)를 마쳤으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의

9.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경제교통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와 택시운전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정산관리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카드 발행, 이용요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의결사항)

- “전용카드”와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정의(안 제2조 제4호~제5호)
 - 전용카드 : 100원 행복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
 -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안 제4조)
- 100원 행복택시 전용카드 발행(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전용카드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 연말까지 사용
 - 전용카드 발급은 무료, 분실·훼손시 카드 원가 이용자 부담
- 100원 행복택시 이용요금 지원·정산 방법 변경(안 제7조 제1항, 제2항)
 - 카드사업자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요금을 택시 사업자에게

선 지급, 매월 군수에게 청구

- 군수는 정산시스템에서 확인 후 매월 카드사업자에게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제안이유

- 장성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마을모정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의결사항)

- 지원대상 등(안 제3조)

- 마을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축·증축·보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함
-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함

- 지원의 제한 등(안 제7조 제1항)

-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신축 25년간, 증축 5년간, 보수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마을회관 등의 관리(안 제10조)

- 마을회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냉·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는 해당마을에서 부담해야 함

- 처분제한(안 제11조)

- 마을(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수정안의 요지

-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냉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는 해당마을에서 부담한다에서 (냉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 의결결과 : 수정가결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2. 7. 13.

○ 주요내용

1. 세 입 : 571,909,105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71,909,105	0	0	0	571,909,105
일반회계	560,426,251	0	0	0	560,426,251
특별회계	11,482,854	0	0	0	11,482,854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571,909,105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540,000천원(삭감조서 참조)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540,000천원(예비비)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71,909,105	540,000	540,000	0	571,909,105
일반회계	560,426,251	540,000	540,000	0	560,426,251
특별회계	11,482,854	0	0	0	11,482,854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마. 증액조서 : 붙임과 같음

[붙임]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계	3건	1,040,000	540,000	500,000	
시설비	용작교 주변 경관 개선사업	1,000,000	500,000	500,000	
시설비	제봉산 산책로 개설(단광마을)	10,000	10,000		
시설비	장성역 앞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0,000	30,00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 540,000천원(증)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수정가결